

토론문

법무법인 태림

하정림 변호사

1. 전기요금 관련 규제의 불명확성 및 불합리

- 법규 대부분이 불확정 개념(판례) → 현재 결정 당시 제청법원 입장과 같이 '조세' 개념으로 본다면 오히려 명확해야 할 것임(*개념모순)
- 총괄원가제도 및 현 전기요금이 형식적으로는 '망 이용'을 전제하고 있으나, 실질 반영 되어 있지 않음
 - ※ 예시) 발전소 인근에서 환경적 불이익을 받으며 인근에 있는 주민의 전기료와, 발전소와 멀리 떨어진 서울 도심 주민의 전기료 동일
- 민간 발전소로부터 비싼 값으로 사서 싼 값에 팔 수 밖에 없는 구조 자체의 모순(공적자금 부담으로 전가가가능성)
- 다수 불확정개념으로 인하여 오히려 명시적 제도개선 없는 관행개선이 어려움(당사 유관기관 등의 책임 문제 등)

2. 전력시장의 체계부정합 및 사법규제 일탈

- 경직된 시장구조로 인해 분쟁 적고, 전기사업법의 부정합 체계로 인하여 (법은 경쟁시장 구조이나, 현실은 독점) 규제조항이 적용되지도 못한 상태로 방치되어 '법'이 기능하지 못하는 기현상 발생
-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, 간혹 분쟁이 제기되어도 기술적 지식에 우위가 있는 일부 전력시장 당사자만의 의견이 반영되기 마련이고, 전력구매자 등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움
- 하위 규정인 제반 내규, 규칙 등 이른바 '그리드 코드'로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는 모순 →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침해 문제 심각 → 법조계

차원에서의 관심 환기 및 고려 필요

※ 예시) 법령상 근거 없이 '고시'를 가지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급전지시 문제 (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며, 보상이 있어야한다는 입법

헌법 위반 소지)

[참고: 극한 재난상황에서 명시적 기준 하에 일시적으로 강제 영업시간 제한을 시키고, 이에 보상을 하였던 코로나 재난보상금 <-> 일시적 재난이 아니라 수시로 출력제한을 시키고, 정확한 기준을 밝히지않으며, 보상도 하지 않는 급전지시 : 공공의 필요 vs. 송배전 사업자의 필요? 보상주체?]

3. 현재 가능한 개선방안의 제도적 뒷받침 부족

- 현재 PPA 등 재량이 있는 부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망 이용료 기타 조건이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아, 실제 이를 원하는 판매처와 구매처가 있음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음
- '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'는 원칙에 따라, (예컨대 위 PPA 등의 큰 걸림돌이 되는) 망 이용료의 경우, 한시적 면제하고 구체적 근거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할 필요(입법 과제)
- 현재 '죽어 있는' 다수의 전기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및 이슈환기 할 필요성(예: 송배정망 이용료 관련 고시 → 개정기한 넘기고도 전혀 개정되지 않는 등)

4. 별도의 전문, 독립규제기관 설치 필요성

- 기술 분야에 치우친 전력시장 구조 → 여러 권리침해 및 체계 부정합성이 영킨 채로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음 → 법 전문가 참여 필요
- 여러 분쟁상황 발생시 이의제기, 분쟁해결을 주관할 기관 필요